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3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성인지(性認知) 및 평등가치의 중시 등 국내외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로 변경하고,

○ 여성정책의 기초가 되는 성인지 통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주요정책이나 예·결산 등에 대하여 성인지적 분석·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및 총칙의 보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함.
 -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 신설
 - 적극적 조치에 대한 재정의
 - 가족지원 사업 근거 마련
- 성인지 통계·성인지예산 제도의 적용(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의 변경(안 제25조, 안 제37조)

4. 검토의견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2005년 제정된 이래로 6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그 동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큰 폭의 개정없이 기본적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어 왔음.

이번 개정안은 2005년 이후 변화된 여성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성평등 이념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임.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명을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 적극적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등 여성정책관

련 제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 구현을 위한 시책 강구,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시책 강구의 의무를 신설하여 충청북도 여성정책의 내용을 보강한 것임.

먼저, 제명의 변경을 보면, '발전론적 시각'에서 벗어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여성 대상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시책, 가족 관련 시책 등 주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붙 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